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시행 2016.6.30] [교육부예규 제26호, 2016.6.30., 일부개정]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1. 목적

본 예규는 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체의 범위

아래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위탁형태

- 가. 단독위탁 : 위탁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대학에 학과 또는 계열(이하 '학과'라 한다) 별로 위탁.
- 나. 연합위탁 : 둘 이상의 위탁업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대학에 학과별로 위탁.

4. 실시기준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함.

5. 위탁 학생수 및 학급편성

- 가. 학생수 : 당해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주간·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의 50% 내지 100% 범위 안에서 교육시설 및 교원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
- 나. 학급편성 : 40명 단위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혼합편성할 수 있음.

6. 위탁생에 대한 설치학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가. 설치학과 : 당해 전문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함.
- 나. 교육과정
 - 1) 혼합편성 :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하되,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2) 별도학급 :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신기술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산업체의 교육적 요구사항 반영 등 신축적으로 편성·운영.

7. 위탁생의 선발

- 가. 지원자격 : 산업체위탁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집시기 지원 가능).
- 나. 지원 및 전형절차 : 산업체의 추천에 의거 당해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함.

8.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

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위탁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이지만, 위탁생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내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또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제12조 가목에 따른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9.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

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가.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 나.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
-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
-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마.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
- 사.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실험·실습관련 교과목에 한함).
- 아. 교육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10. 위탁교육의 계약 및 경비부담, 납부방법 등

- 가. 위탁교육계약 : 위탁업체의 장(지역단위기관, 지점 등 단위기관의 장을 포함)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함.
- 나. 경비부담 : 당해학과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 위탁업체의 시설지원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음
- 다. 납부방법 : 위탁산업체에서 당해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

- 가. 해당 대학과 업체는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함.
 -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
 - 2)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4)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
 - 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나.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1) 위탁업체 내에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
- 2)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임용 절차에 의거 위탁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적극 활용.

12.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가.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별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
- 나. 위원장은 대학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탁업체 임직원 및 대학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1/2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
 - 1) 위탁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2) 위탁생의 선발기준
 - 3)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 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 6) 학교와 위탁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위탁교육 실시보고

- 가. 대학의 장이 동 지침에 의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까지 익년도의 위탁교육 실시계획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함.
 - * 동 보고사항에는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위탁교육생의 선발인원, 지원자격, 선발기준, 전형일정, 전형방법, 시설 및 교원활용계획,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사관리 등 당해 대학의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에 대하여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다. 대학의 장은 당해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의거 다음해 3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4. 위탁교육계약서

별첨 위탁교육계약서(안)를 참고하여 계약하되, 산업체위탁교육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형편에 맞게 변경사용 가능.

15.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칙변경(예시)

제○○조 (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위탁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16. 기타사항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1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호, 2008.7.28>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호, 2009.9.23>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호, 2009.11.27>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호, 2014.3.26>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호, 2016.6.30>

1.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